

의안번호	2219709
의 퇴 인	최형두 의원
회 답 일	2026.7.16.
추 계 번 호	26E328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기업 임직원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의6 (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신설 － (국가전략기술기업)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 － (성과조건부주식) 국가전략기술기업이 임직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근속, 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주식 － (납부특례)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시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아 얻는 이익(양도당시 시가)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5분의 1씩 향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－ (적용기한) 2029.12.31. 이전에 양도받는 분까지 적용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6(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(이하 “국가전략기술기업”)의 임직원이 해당 국가전략기술기업으로부터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이익에 대

한 소득세를 향후 5년간 매년 5분의 1씩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개정안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,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임
 - 개정안에 따라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성과조건부주식의 양도이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5년에 걸쳐 모두 징수되나, 양도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는 감소하게 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기업으로부터 성과조건부주식을 받는 임직원의 수, 성과조건부주식 양도 시점 및 규모, 양도 당시의 시가, 성과조건부주식에 따른 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성과조건부주식 양도 규모, 양도시점의 시가, 개인별 한계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흥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흥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